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이용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65세 미만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
- 위 항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한다.

□ 이용계약기간

- 이용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급여제공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며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안된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외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2026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에관하고시해당자)	9%

- 방문요양 이용료(2026년 기준)

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15%	9% 경감대상자	6% 경감대상자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 이용계약해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해지 요청을 하였을 경우
-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